

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하수도 사용  
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3 월 12 일

여 수 시 장

2024. 3. 12. 여수시장인

여수시 조례 제2059호

붙임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4호 중 “시 공보”를 “정하며 이를 매년 3월 이전 시 공보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(원/m<sup>3</sup>/일)를 적용한다. 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표 4]

####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

-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, 총사업비, 생산자 물가상승률( $\alpha$ )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$$\text{단위단가} = \frac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(원)}}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}(m^3/\text{일})} \times \alpha$$

- ▷  $\alpha = (1 + R_1) \times \cdots \times (1 + R_n)$
- ▷  $R(\%)$  :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
n :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

- ※ 공공하수처리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(간선관로)를 포함한다.)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.
- ※ 시 관내 2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 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.

## 신.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·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1. ~ 3. (생 략) 4. 오수발생량 1m <sup>3</sup> /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공보, 게시판,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,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.	제21조(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 정하며 이를 매년 3월 이전 시 공보----- ----- -----.
5. · 6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5. ·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3조(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(원/m <sup>3</sup> /일)를 곱하여 산정한다.	제23조(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.

1. (생 략)

2.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 
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
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· ④ (생 략)

[별표 4]

**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**

(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)

○  $m^3$ 당 원인자부담금

$$\alpha = 1 + \frac{\text{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물가상승률}}{100}$$

▷ n :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

\* 공공하수처리시설 [공공하수처리 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(간선관거)를 포함한다.]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---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  
(원/ $m^3$ /일)를 적용한다.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[별표 4]

**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**

(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)

○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, 총사업비, 생산자 물가상승률( $\alpha$ )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$$\text{단위단가} = \frac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}}{\text{총사업비(원)}} \times \alpha$$
$$\times \frac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}}{\text{시설용량}(m^3/\text{일})}$$

▷  $\alpha = (1 + R_1) \times \dots \times (1 + R_n)$

▷ R(%) : 전년대비 물가상승률

n :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

※ 시·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·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.

※ 공공하수처리시설 [공공하수처리 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(간선관거)를 포함한다.]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.

※ 시·관내 2 이상의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·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.